

의안번호	제46호
의 결 년 월 일	2026. 4. 22. (제337회)

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6. 4. 13.

#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6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13.  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조정(안 제9조제1항)
  - 신청기준금액\* : (현행) 1천만원 → (개정) 2천만원
  - \* 신청기준금액 :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금액
-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(안 제9조제1항, 제3항, 제5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제1항
 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제5항 및 제6항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- 기 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031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029)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8377)
  - 입법예고(2026. 2. 20. ~ 2026. 3. 12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조례 제 호

##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청구 등”을 “청구등”으로,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62조의2제5항”을 “제62조의2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청구인 등”을 “청구인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 :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및 수당 지급

나. 관련 조문 : 안 제9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선정대리인 신청 가능 금액 상향에 따라 신청 대상인 영세납세자가 확대되어, 선정대리인 신청 건수 증가가 예상됨

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

- 선정대리인 신청 건수 증가로 연평균 1백만원 비용 발생 예상  
(총 5년간 5백만원 비용 발생 예상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군비

### 3. 작성자

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손 종 건(☎ 041-750-2410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선정대리인 실비 및 수당 지급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재원 조달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지방세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지방소멸대응기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 관 계 법 령

###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
###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~ ④ 생략

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⑦ 생략